

**생활과 윤리**

**롤스/노직/알처**

# 사회 정의

## 공통점

	공통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sup>1)</sup> (20-09-18)	
2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불평등을 제거해야만 하는가? (19-09-17)	
3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된다면 기본적 자유의 침해는 정당한가? (19-09-17)	
4	정의로운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 (18-11-19)	
5	개인이 좋거나 나쁜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20특)	
6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가는 우연의 문제이다. (19특)	
7	개인은 스스로 자기 삶의 목적을 선택하고 영위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다. (18완)	

## 노직 Nozick

	최소 국가론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20-11-03)	
2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부유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부당한가? (19-11-09)	
3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다면 국가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20완)	
4	국가가 국방과 치안을 위해 과세하는 것은 강제 노동과 같은가? <sup>2)</sup> (19특)	
5	다양한 국가 형태들 중에 개인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것이 있는가? <sup>3)</sup> (19특)	

1) 공정한 절차에 따른 분배는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2) 국가의 기능이 폭력,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고 최소 국가를 옹호하였다. 따라서 국방과 치안을 위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같다고 보지 않았다.

3) 개인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유일한 국가가 바로 최소 국가라고 보았다.

분배		☒
1	사적 소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상적인 분배가 가능한가? (19-11-09)	
2	가장 불리한 계층을 위한 국가의 재분배 과세는 부당하다. (19특)	
3	부정의의 교정을 위한 것이 아닌 재분배 과세는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19특)	
4	적극적 우대 정책을 개인의 재능과 능력에 따른 기여도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18완)	
5	적극적 우대 정책을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18완)	
6	국가의 역할은 개인이 가진 권리와 재산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국한된다. (18완)	

정의의 원칙		
1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다면 빈부의 격차도 정당한가? (20-06-10)	
2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20-09-18)	
3	소유의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취득의 과정이나 이전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0-09-18-해설)	
4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20-09-18-해설)	
5	재화 소유의 역사적 과정보다 최종적 분배 결과가 더 중요하다. (20-11-03)	
6	노동 투입은 최초 취득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인가? (19-11-09)	
7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는가? <sup>4)</sup> (17-11-19)	
8	소유물의 이전은 개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가? <sup>5)</sup> (20완)	
9	자발적인 자선 행위는 개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방식인가? (19특)	
10	개인의 배타적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이다. (20특)	
11	제1원칙은 최초 취득의 정당성을 요구한다. (20특)	
12	제2원칙은 제1원칙의 위반을 시정하는 원칙이다. <sup>6)</sup> (20특)	
13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취급할 수 있는가? <sup>7)</sup> (20특)	
14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에서만 사유화는 정당한가? (20특)	
15	취득, 이전, 교정에 있어서 국가는 어떤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19완)	
16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고, 자기 소유권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했다면 그 소유물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완)	

4) 최초의 취득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5) 잘못된 취득과 양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에 의한 소유물의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하였다.

6)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과 정당한 양도(이전)의 원칙에 대한 위반을 시정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7)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은 '개인'이지 '소유물'이 아니다. 그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